

## 가천·삼송자동차연구센터규정

#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설치한 가천·삼송 자동차 연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)** 이 센터는 “가천·삼송 자동차 연구센터” (이하, ‘센터’)라 한다.

**제3조(소재 및 설치)** 이 센터의 사무소는 가천대학교(이하, ‘본교’)에 둔다.

### 제2장 사 업

**제4조(본 센터의 목적)** 본 센터는 미래자동차 산업에서 Computer Aided Engineering(이하 CAE라 한다)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산·학 공동으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현장실무형 CAE 인재 양성과, 신기술 및 R&D 능력 증진을 위한 개발과 운영을 관할한다.

**제5조(사업)** 본 센터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
1. 미래자동차 설계 및 해석분야에 대한 연구
2. 자동차 안전 신기술에 대한 개발 및 연구
3. CAE 인프라 구축
4. 제조업 설계 품질 향상을 위한 최적의 모델 개발
5. 불량발생 제품 개선해석 (문제해결 솔루션 제공)
6. 가혹조건에서의 제품 성능평가
7. 차량 충돌 평가 및 분석
8. 산·학 공동연구 및 관련시설 공동 활용을 통한 정부국책과제 및 연구과제 참여
9. 기타 본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### 제3장 조 직

#### 4-1-32~2 제4편 부속기관

**제6조(구성)** ①본 센터는 센터장, 연구소장, 연구원 등으로 구성하며, 본 센터의 운영을 위해 행정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②본 센터는 운영자문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③본 센터는 미래자동차기획과, 차량안전, 삼성 자체 연구 분과 등의 부서 또는 연구소를 둘 수 있다.

**제7조(자격 및 임명)** ①센터장은 본 대학교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연구소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삼성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연구원은 미래자동차기획과, 차량안전, 삼성 자체연구 분과로 나누어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센터장이 임명한다.

④본 센터에는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**제8조(직무)** ①센터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.

②연구소장은 본 센터의 각종 사업과 실무를 주관한다.

③연구원은 본 센터의 연구소장 지휘아래 각종 사업을 기획·추진한다.

④운영위원은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, 자문한다.

⑤행정보조원은 일반 사무를 처리하고 연구소장과 연구원을 보조한다.

**제9조(직무대행)** ①센터장의 유고시 센터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센터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②센터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이 센터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선출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
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위원은 지체 없이 센터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**제10조(파견직원)** 본 센터의 업무 지원을 위해 삼성의 전문직원이 파견될 수 있다.

### 제4장 운영위원회

**제11조(설치)** 본 센터에는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심의, 자문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.

**제12조(조직)**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임하고,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③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장, 센터장 추천 1명, 삼송 대표이사 추천 2명, 재단법인 운봉장학문화재단 추천 1명으로 구성한다.

**제13조(업무 및 권한)**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 한다.

1.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수립·변경 및 추진상황 점검·평가에 관한 사항
2. 각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
3. 센터의 예산수립, 결산,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
4. 센터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5. 기타 본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**제14조(의결정족수)**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**제15조(의결제척사유)**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센터의 이해가 상반될 때
3. 민·형사상 사유로 기소된 경우

**제16조(회의)** 운영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**제17조(운영위원회의 소집)**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정기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운영위원 전원이 소집하고, 또 그 전원이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**제18조(운영위원회의 소집의 특례)**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위원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운영위원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운영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2인 이상의 발의로 소집할 수 있다.
3. 제2항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운영은 출석위원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.

제19조(회의록) 회의록은 회의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

## 제5장 재 정

제20조(경비 및 연구비) 본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연구비는 용역사업비, 정부보조금, 기부금,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21조(회계연도)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## 제6장 보 칙

제22조(규정의 변경) 이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결정한다.

제23조(해산) 이 센터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4조(잔여재산의 귀속) 이 센터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 중, 기자재 및 집기 비품은 가천대학교로 귀속하고 삼송 연구 분과의 유무형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삼송으로 한다.

제25조(운영세칙)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.

제26조(공고사항 및 방법)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가천대학교 및 삼송에 공고하여 행한다.

1. 센터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
2. 기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기로 결정된 사항

제27조(준용)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0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